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

판 결

사건 2023고단1131 횡령

피고인 A

검사 박소영(기소, 공판)

판결선고 2023. 10. 11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피고인은 2022. 12. 16. 15: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계좌이체 과정에서 수취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송금한 4,300,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.

그런데 피고인은 2022. 12. 23.경 피해자로부터 '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'는 요청을 받아, 위와 같이 송금 받아 보관 중인 4,300,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의 법정진술

- 1.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계좌별 거래명세표, 문자 메시지, 각 계좌거래내역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55조 제1항, 징역형 선택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(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)

1.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양형의 이유

-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개월~5년
-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[유형의 결정] 횡령·배임범죄 > 01. 횡령·배임 > [제1유형] 1억 원 미만

[특별양형인자] 없음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기본영역, 징역 4개월~1년 4개월

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4월, 집행유예 1년

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 방법, 경위, 범행의 동기·수단·결과,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- 불리한 정상: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송금한 돈 43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.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 는 등으로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도 하였다.
- 유리한 정상: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2024. 1. 25.까지 매달 25일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.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.

판사 노민식